

붙임 1.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계속지원 신청서

사 업 명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20 년 제 차)		
기업명 / 지원금액			

본사는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방산분야 참여가 지속되고 있어 상호간 체결된 기존 협약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지원을 희망하므로 이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체 구분	방산업체 () 협력업체()		
방산 매출액	원	방산분야 종업원 수	명
협력현황 (협력업체인 경우에만 작성)	관련 방산업체	납품 품목 (협력 분야)	
	방산업체 담당부서 (협력업체 확인)	방산업체 담당자 (연락처)	
방위산업기술 보유 여부	보유() 미보유()	지원받은 횟수 (방위사업청 UTM 임차료 지원사업)	()회
보안사고 발생 유무	있었음() 없었음()	보안사고 발생 연도	

20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붙임 2.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I.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년 월 일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			
					FAX			
	사업장	우편번호() 주소 :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자우편				
담당자		부서명		직위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e-mail		
업종					매출액 (수출액)	억원 (억원/ 천불)		
주 생산품목								
종업원 수					자본금			
재무 현황 (최근 3년)	연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자산총계 (천원)	부채총계 (천원)	자본총계 (천원)	
	2019							
	2018							
	2017							

II. 방산관련 사업참여 현황

업체 구분	방산업체 () 협력업체()		
방산 매출액	원	방산분야 종업원 수	명
협력현황 (협력업체인 경우에만 작성)	관련 방산업체		납품 품목 (협력 분야)
	방산업체 담당부서 (협력업체 확인)		방산업체 담당자 (연락처)
방위산업기술 보유 여부	보유() 미보유()	방산업체 지정여부	(O or X)
보안관계 운영기간	()개월	지원받은 횟수 (방위사업청 UTM 임차료 지원사업)	()회
보안사고 발생 유무	있었음() 없었음()	보안사고 발생 연도	

III. 서비스 사항

1. 통합보안장비 설치(예정) 장소	
2. 월 임차료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3. 기타	사용 PC 대수 ()대 , 웹서버 ()대 메일서버 ()대 , 기타서버 ()대
<p>“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업 :</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 (인)</p> <p>방위사업청장 귀하</p>	

붙임 3.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 업 명	방산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업명	

본사는 본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정부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시 협약 해약, 정부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귀사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붙임 4.

【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0 - 73 호

방산 중소기업·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방산관련 기업의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방산 중소기업·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방위사업청장

< 요약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업당)	모집기간
방산 중소기업·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20-4차)	○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UTM) 임차비용 12개월분 지원	최대 250만원	10. 30.(금) ~ 11. 30.(월)

< 지원사업 세부내용 >

1. 지원 내용

방산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협약체결 당해월로부터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 (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업체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한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 “대상기관” 또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

* 관련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 · 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 중인 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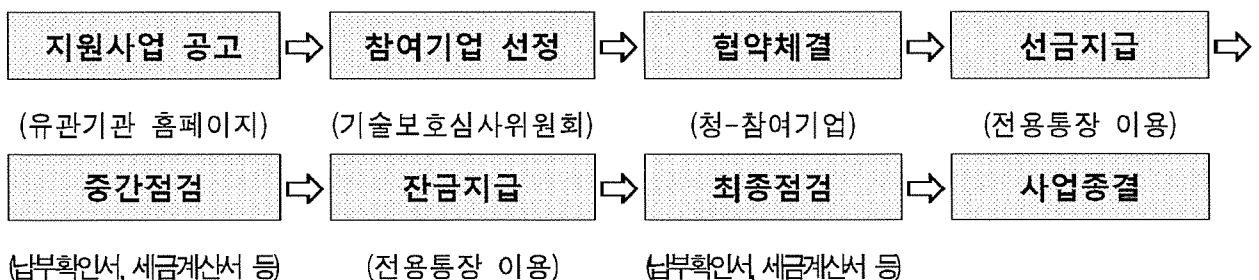
3. 사업기간 및 지원 규모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각 기업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 (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10. 30.(금) ~ 11. 30.(월)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 * 제출서류는 “별지” 에 포함
 - 계속지원 시 : 계속지원 신청서 (잔여 지원기간 2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
 - 신규지원 시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 계약서(임차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방산업체지정서(해당시),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사업수행 절차



6. 선정방법

-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기준 우선순위 >

1. 방산업체 지정기업
2.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
3. 중소기업 우선 지원
4. 영업이익(또는 순이익)이 적은 기업
5.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

※ (참고사항)

- 계속지원 신청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예산 현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중 기술유출사고 또는 수출관련 사고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7.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업담당자
(02-2079-6978, security2018@korea.kr)

별지 : 사업 신청 관련 서류 양식 일체